

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7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2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10. 1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기결

2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시행 2022. 11. 15.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용어 변경
· 정수책정물품 → 정수관리대상물품(안 제9조제1항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제78조제4항 개정에 따라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산정 규정 정비(안 제17조제4항)

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정비(안 제16조제3항)

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2조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

-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고성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(안 제34조)

라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제75조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물품 무상 대부(안 제35조)

마. 「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품의 품종 및 상태 구분 정비[별표 1]

- 소모품 구분 기준 변경(취득단가 3만원 → 50만원)
- 바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3088(2023. 8. 25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71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08. 25. ~ 2023. 09. 14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조례에서 정하도록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관리책임 및 관리사무의 위임(안 제2조, 제4조)

-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, 물품출납공무원·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물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음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5조에 따른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권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.
- 물품매입 등의 요구, 매입 요구의 심사(안 제8조~제9조)
 - 매입 절차와 정수관리대상물품 여부 등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물품을 계획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였음.
-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및 기증품의 취득(안 제10조~제11조)
 -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과 매입 절차를 지정하고, 기증품 취득 시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음.
-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, 매각 및 폐기(안 제16조~제18조)
 - 불용결정에 관한 절차와 소요조회 기준, 불용품 매각과 관련한 가격 결정 방법과 절차, 매각 제외품에 대한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등 불용품 처리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여 불용품의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물품을 투명하게 처분하도록 하였음.
- 물품의 보관책임, 분실·훼손 보고, 변상책임(안 제20조~제23조)
 - 보관의 구분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고, 분실·훼손 시의 보고 절차와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 보관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였음.
- 물품관리사무의 검사(안 제27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관리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도록 함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 검사 공무원으로 지명하였음.
-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(안 제34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2조에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 물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.

- 물품의 무상대부(안 제35조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공공물품 사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- 물품의 품종·상태 구분 정비(안 제34조 관련 별표 1)

- 「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품의 종류, 상태구분을 정비하였음.
-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 등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, 소모품 취득단가를 50만원 미만으로 한 것은 상위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물가상황을 반영하였을 것으로 조례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으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모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9. 원안가결